

**세무사 단체의 이익을 행하기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처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2016년 10월 4일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부여 폐지 법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20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이를 상정하여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법안의 상정 및 처리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1) 세무사의 업무는 세법의 영역에 관한 일반 법률사무로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당연한 직무에 속하는 영역이다.**

○ 세무사법 제2조에 세무사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조세에 관한 각종 신청, 서류작성, 자문,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사항은 모두 “세법의 영역에 관한 일반 법률사무”로서,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에 해당한다.

○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도입되었으며, 공법, 민사법 및 형사법 등 기본법은 물론, 세법, 지적재산권법, 노동법, 환경법, 경제법 등 다양한 전문과목을 교육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 대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 이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국민을 위하여 변호사법에 규정된 다양한 분야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당연히 조세법 관련 법률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세무사법은 당연히 유지되어야 한다.

**(2) 이익단체의 요구에 의해 변호사의 직무범위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입법은 국민에 대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저해한다.**

○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등 법조 유사직역은 과거에 법조인을 양성하기 어렵고 변호사의 수가 적었던 시대에 부족한 법조 인력을 보충하거나 보완하기 위하여 일본의 제도를 도입한 것에 불과하다.

○ 세무사 제도 역시 변호사의 수가 적어서 변호사의 모든 직무 영역을 변호사들이 담당하기 어렵던 시기에 변호사의 직무 영역 중에서 세무에 관한 일부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이와 같이 세무사의 업무는 변호사의 직무 영역에서 파생된 업무에 해당하므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의 부여가 합리성을 결여한 것은 아니다.

○ 과거와는 달리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에 의하여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변호사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오히려 법조 유사직역을 통폐합하여 전문법조인인 변호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올바른 길이다.

**(3)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부여 폐지는 세무사 단체의 기득권만을 옹호해 주고 국민이 세무에 관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국회는 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